

제422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7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2)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1)
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

상정된 안건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3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3
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2)	8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1)	9
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9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15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15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15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15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5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5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15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15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15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15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15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15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15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15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15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15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15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15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15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15

(10시19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본회의에 대비해서 각 당의 의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11시에 있고 저희 당도 또 의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는 한 11시 전후까지 하고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오늘 법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 의견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10시21분)

○**소위원장 이원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강준현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3페이지인데요.

개정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하천 점용허가 구역 중의 6.2%가 친환경 면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경우 수질오염 우려가 적고, 허가관청에서 친환경농업 유도를 조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8조 2항에 따라 ‘토지’를 ‘농지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등이 의제된 농지 중에 공용수용된 농지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 의원안은 산업단지 등 관련 농지로 하고 있고, 박덕흠 의원안은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검토의견은 박덕흠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 형상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직불금 제도에 부합하다고 보았고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의 전용 협의부터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의제는 외부요인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년 8월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자구 정리 의견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의 ‘지구·지역·단지로 지정된 토지’에서 라목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토지’를 ‘농지’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등록신청’이 14조 2항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에도 라목에 관련 입법례를 고려해서 ‘편입’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관련해서 23년 10월 90명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참고자료2에 관련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12쪽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직불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현행은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협의 단계에서 직불금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관련 실시계획 수립·고시 때 지급이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해소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2의 15·16·17, 세종·충주·논산에 이 개정안이 직접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개 단지의 면적은 355ha가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를 수정했는데요. 등록신청 시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세종이나 충주의 경우 23년 10월 실시계획 수립되었고 금년 4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25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선 3페이지에 있는, 하천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부도 이 부분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좀 고민했던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듣고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이게 하천변 같으면 국공유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게 사실은 더 타당합니다. 여기에 갈대를 심든지 경관작물을 심어서 같이 누리도록 하는 게 좋은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임대해 줘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지금도 친환경직불금은 받습니다. 다만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의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이게 공공용지니까 이것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 일단은 특혜를 부여받은 건데 그다음에 이게 공공용지니까 사실 개인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을 뭔가 언젠가는 끊어서 그만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기본직불금까지 주는 게 맞는 거냐, 첫 번째 그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여기에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은 하천으로 이어지는 비점오염원이 됩니다. 다만 이게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관행농업보다는 훨씬 더 오염의 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필요는 기존의 관행농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직불금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바꾸도록 유도해 가자,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실무자들 생각은 그래도 현재 있는 것을 관행농업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게 좋으니까 기본직불금을 주는 게 좋겠다, 다음에 농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는 기본직불금 대상으로 넣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도 일단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것은 하천에서 원래는 안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빼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기본직불금을 주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농사를 계속 짓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 공익직불금의 그중에서도 기본직불금의 기본 의미로 본다 그러면 농업을 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내니까 또 그 공익적 가치가 농산물의 시장가격에는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일부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니까 그 취지로 보면 농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공익적 가치 창출하니까 직불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 수용의 경우에 보상을 정부가 하고 수용을 하고 그럴 경우에 농지의 가치, 보상금을 책정하는 가치에 직불금을 기준에 받고 있었으면 그 가치까지 반영이 돼 있었을 거니까 그 수용할 때 농지 보상금에 그 가격이 반영, 일부는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중복해서 중간에 직불금도 주고 그다음에 보상금 받을 때 그것도 또 가져가는 게 맞을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직불금의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그 보상금하고 관계없이 농사를 짓고 있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내니까 직불금을 주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저는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실무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봤을 때는 어쨌든 직불금의 기본 목적이나 이런 걸로 따져 가지고 직불금을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한번 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부터 위원님들 말씀……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차관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하천에서 예를 들면 수몰된 지역도 있지요, 하천 부지가? 수몰된 지역을 보면 기존에 원래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짓는 경우가 거의 많고 또 돌아가셨을 때는 다른 사

람들이 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지금 기준에 짓는 것을 다시 우리가 농사를 못 짓게 하면 엄청난 반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준에 농사를 그 지역에서 짓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 민원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못 지으면 팬찮은데 계속 짓는다고 할 때는 거기 자기를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도 사실은 차관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천 부지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경우 이게 원래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용권, 경작권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그 경작권을 매매한 다음에 캠코에다가 사용료를 내지요. 비용을 내는 방식인데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직불금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된다, 기본직불금이 된다고 하면 이 경작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도 사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이 경작권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래인데 현장에서는 이게 이미 당연한 걸로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천 부지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작권이 매우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희 지역에도 큰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수지가 조성될 때 거의 자기 농지가 거기 수몰적으로 편입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토가 아예 없는 그런 자연부락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당연히 기본직불금이 지금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역시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도 보시면 대법원 판례가 이미 그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할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논의할 내용이 없이 일부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게 경작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수몰된 지역, 예를 들면 대청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경작권 양도를 못 하게 하는 것 같던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아마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박덕흠 위원** 하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한번 받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거다, 염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차관님 고민한 것은 고민한 대로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고민 속에 녹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천법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면 점용허가를 받잖아요.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공식적으로 해 주고 불법적인 내용은 점용허가를 못 받아서 불법적인 거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점오염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요건에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이미 조건상으로 재허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님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걸려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이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입법안을 개정하면 충실하게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법안 내용은 좋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토지 수용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 물론 토지 수용할 때 우리가 수용하는 시점까지 보상은 이루어지니까 그 내용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익적불금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까지 다 넣어서 보상해 줄 만큼 정부가 아량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들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간에 실제 부득이하게 강제 수용이 되는 불이익이 있었고 또 그 중간에 농사지을 수 있어서 농사를 실제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자기가 관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배려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입법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차관님께서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긍정성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이제 무농약농산물인 경우에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여기 3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관련해서 하천 수질오염의 실제 영향,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연구 결과가 있는데 확실히 관행농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듭니다, 오염을 미치는 영향이.

○문대림 위원 환경적 우려가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질소가 77.1%, 인이 44.6%가 줄어들고 유기물 COD가 60.8%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별한 환경적 이슈가 없다면 찬성……

○임미애 위원 농사는 어차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농사는 짓고 있는 거여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바꿔 주면 더 좋기는 하니까요.

○임미애 위원 친환경으로 바꾸는 촉진효과가 있으니 그런 경우에 기본직불금을 지급 하자라는 거여서 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권에 대한 거래는 농촌 현장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분명히 넘길 때는 직불금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얹혀져서 가격이 굉장히 뛸 것이다.

이 농지를 경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예요. 내 농지하고 붙어 있는데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허가받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캠코가 이것을 불하할 때 불하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 이 하천부지의 경작권을 산단 말이예요, 부득이하게 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경작권 매매 가격이 무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건 불법이니까 단속해야 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여러 말씀 들었는데 제 생각에 그러면 정부가 경작권 거래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하천부지니까 아무래도 공공용지니까 농사짓는 것을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라도 줄여 가고 그다음에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을 관계부처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고 같이 이 법도 시행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윤준병 위원 정부가 부수적으로 노력하시고 이걸 개정하고 그러면 되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주문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오염 배출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경작권 거래에 대해서 단속이랄까 이런 걸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의견으로 해서 원안 가결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 수정 의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해 주신 대로……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출한 걸 원안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은 각각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31)

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12)

(10시40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김도읍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총 3건인데 심사자료 2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2건의 개정안은 총 5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9조에 김도읍·민홍철 의원안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현재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 필요 의견입니다.

현재 재량 지정으로도 가능하고 이미 충북에서 한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매년 2개소 지정 시 약 5년간 289억 원의 재정 소요가 들어갑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재량 지정 또는 의무 지정 입법례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을 앞선 개정안처럼 재량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3년 5월에 aT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분의 입법례는 재량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12조에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게 선정되는 우수화원의 선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수화원 선정이 법에는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정안이 되더라도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화원협회에서 2020년까지 착한 꽃집 인증 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산 화훼 판매 기준으로 75.8% 점유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인데요, 모든 화환의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사용 화환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화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산지 등 다양한 표시 사항을 하고 있고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1월 달 저희 소위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자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화환 표시제 관련 전제 사항인데요. 표에 보시면 모든 화환의 표시에 대한 조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조사 사항도 원산지 표시 여부 및 기록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선 화환의 표시 의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의 모든 화환의 표시제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도 화환 표시 의무 제도와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의 과태료 부과 신설도 앞서 보고드린 표시 의무 제도와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페이지, 1번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보내왔고요. 사실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놔 두셔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확보하는 대로 추가로 필요한 데를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2번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입니다.

이것도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내왔고요. 전담기관으로는 지금 aT 그러니까 유통공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하나 이상 전담기관으로 저희들이 더 지정 할 생각은 없고요.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지 않아도, 현행대로 놔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우수화원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넣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일단 WTO 위반 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적인 요건으로 분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묘목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키워 가지고 그걸 파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산이 거의 없게 됩니다. 대부분 수입 산이어서 분화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우수화원 선정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절화와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것은 국내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삽수나 대목이나 이런 것들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키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다 국내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화의 경우는 전부 다 국내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국내산 비율을 안 넣어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화원에 국내산 비율을 넣는 게 오히려 국내 농가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4번, 모든 화환에다가 표시제 하는 것. 지금 현재는 재사용 화환에 대해서만 표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사용 화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 쓰는 화환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화환에다가 표시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하자는 이유가 자꾸 화훼 소비가 줄어들고 한번 썼던 걸 더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바꿔 쓰게 하는 취지로 해서 생화를 소비 촉진을

하자 이렇게 갔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오히려 생화를 덜 쓰는, 조화를 더 많이 써 버리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화를 덜 쓰게 되고 오히려 조화로 다 바꿔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있는 거에다가 더 기존 화환까지 다 바꿔 쓰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원래 취지는 생화 소비 촉진인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좋은지, 제도적으로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화원협회에서도 이것을 1년 동안 어떻게 쓴 건지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모든 화환의 표시에 대한 조사 주체를 확대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재사용 화환으로 있다가 화환으로 해 가지고 앞에서 전체 화환으로 들어났으니까 이렇게 바꿔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주체를 만약에 현행대로 재사용 화환만 하더라도 조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것, 그 두 가지 내용이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화환 전체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사용 화환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여기에다가 조사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도 위임 조항을 통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신고포상금 제도입니다.

모든 화환의 표시제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화환 전체로 확대하는 것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반대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과태료 조항 관련해서도 이걸 재사용 화환에서 모든 화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기본 취지는 화환을 활용도를 높여서 화훼농가나 이걸 진작시키자는 취지의 의중이 담겨 있는 제안이잖아요. 저는 여기 담겨 있는 의중이 좀 연구를 통해서라도 잘 관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더 근본적으로, 지금 조화가 생화를 다 압도해서 사실상 생화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서 조화 사용을 좀 줄이고 생화 활용도를 높여서 실제 화훼농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생화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일 텐데, 저는 화환의 정의부터, 생화가 얼마 이상 들어가면 화환으로 인정한다든지 이것부터 정리를 해서 실제 생화의 활용률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화훼농가나 이쪽에 기여할 수 있는 법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아마 농식품부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더 보강해서 마련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사실 문화다 보니까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담당 국장할 때 화훼 때문에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 그때 김영란법 생기면서 갑자기 선물 이런 것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에서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을 하자, 그래서 구독하자 이런 것도 해 봤었고. 지금 있는 결혼식장이나 이렇게 하는 그 화환 말고 생화로만 만드는 신화환 해 가지고 거치대를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장례식장이나 이런 테다가 조화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화환을 쓰게 되면 그것을 바로 파쇄해 버릴 수 있도록 파쇄기 보급하는 것, 이런 것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다 보니까 정말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입장에서 대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지정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최초로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화훼산업 진흥지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게 공동생산시설이나 가공·유통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 일률적으로 추가 지정한다 하더라도 국비 20억 가지고는 진흥지역 육성이라고 하는 기본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흥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진흥에 충분할 정도의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진정으로 화훼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기보다는 재량으로 두되 그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유통·소비시설, 농가 조직화, 마케팅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도 총사업비 40억에 국비 50%, 20억 나가는데 조금 더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리해 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그다음 법안 발의할 때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재량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담기관 관련해서 ‘지정하여야 한다’인데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을 두는 게 좀 그렇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전담기관을 전국적으로 하나만 지정하는 겁니까, 진흥지역 지정하는 곳마다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 군데로 하고 있고요. 지금 aT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전국에 하나, aT 그 화훼센터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미 지정돼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건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법안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이미 지정돼 있으니까 의무화해야 한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건 좀 그런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일단 관계부처 반대도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이원택** 넘어가겠습니다.

우수화원 선정 요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측 의견 또 전문위원 측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화환이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모든 화환으로 갈 거냐 이런 건데 이 부분에 사실 꽃집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연관돼서 다 통으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뒷부분은.

그러면 이 법안은 완전히 하나도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4페이지의 조사 주체에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것은 수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현행 조문에서 조사 주체만 늘리는 것은.

○**임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영으로도 가능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현재도 가능합니다만, 바꾸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이 법안은 그러면 보류……

○**문대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읍·민홍철 의원님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한번 차관께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이것은 보류시키고 화훼의 개념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정리된 의견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괜찮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빨의한 두 분 의원님 지역구에 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현안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아마 신청하신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산업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3번입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의 생화 사용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327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조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협행법에서 생화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화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생화'를 '화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에 보시면 화훼의 정의 규정 관련해서 제2조에 화훼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2조에서 화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페이지의 국가 등의 생화 사용 노력 의무 신설 관련해서 저희들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문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항을 한번 제가 수정한 내용 불러 드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구매 확대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넣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행일 조항은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공포한 날부터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 의견대로 수정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정부 의견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11시00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20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4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달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종중과 사찰의 농지 소유와 관련하여 농림부의 전향적인 대안 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종중과 전통사찰은 각각 200평 또는 3000평의 면적까지는 종중 또는 전통사찰 명의로 하고 있는데 그 초과 면적은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초과된 면적의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종중 또는 사찰 명의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찬성 의견이 있고요. 현재 종중 소유의 현황을

보면 농지 소유 종중 수는 7만 8000개고 약 27만 7000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통사찰은 현재 982개가 있는데 약 1만 5000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양산 통도사의 농지대장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법안 발의하신 주호영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 제안을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장님과 농림축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에게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법인이 아니면서 등기 능력이 있는 단체가 4개 있습니다. 법인은 아닌데 등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종종 그다음에 이중이라고, 동중 혹은 이중이라고 마을 단체 그다음에 동창회, 사찰 이렇게 네 가지가 법률적으로 법인은 아니지만 등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농지를 다 취득했습니다. 농지개혁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 취득을 했었는데 91년인가 92년경에 농림부에 있는 담당자가 농민이나 영농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지 마라는 문서를 각 등기소에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등기가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전통사찰은 현재 농지를 1만 5000필지를 가지고 있고 종중·문중은 27만 6000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뮤여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종중 같은 경우는 종중이 지금 희박해지고 소멸된다 하지마는 뿐만 아니라 문중은 아직도 농지를 취득하고 위토답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종택이 많은데 국가가 종택 기와지붕 이어주는 일은 권장하면서 이것은 막아 가지고 종중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전통사찰은 지금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길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 만든다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법인은 이사들이 있는데 스님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가 스님이 다른 절에 가든지 죽으면 계속 등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을 끼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허가해서. 그런데 교육 목적이라는 게, 결국 농사짓는 겁니다.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겁니다. 농업 교육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농사지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해서 이용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허용해 놓으면서 제도가 정비가 안 돼서 사찰이 세 가지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도사면 통도사 소유인 것도 있고 대한불교조계종통도사도 있고 통도영농법인도 있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농지를 가지고 있는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길을 열어 주면 가장 간단한데 행정규제로 복잡해져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법인도 만들 수 없고 도청의 절차를 밟기 어려우니까 주지 명의로 등기를 해 놓습니다. 그 주지가 돌아가니까 조카들이 내 지분 내놓으라고 덤벼들고 이런 일이 술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림부는 지금까지 ‘경

자유전의 원칙에 반합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법에 영농법인, 농민 아니면 안 된다는 것만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그다음에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반대로 말하면 심지어 위헌이냐, 아니냐의 정도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법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좋은 제도나 법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뭉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전통사찰 면에서만 보면 심지어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활동을 많이 방해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도 있고 헌법에서도 우리 전통문화는 권장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의 취지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런데 또 하나 '형평성에 반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형평성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기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을 목적은 다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의 경우는 법에서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기농지를 가지고 있는 종중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해서 형평에 반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따지면 교회도 사실은 취득능력이 있습니다. 기농지를 가지고 있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은 다 취득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인데, 이렇게 고식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합니다' 하면서 고집하고 있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주호영 의원 죄송합니다. 한 말씀 빠셨습니다.

이 조항들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 공히 공약으로 채택돼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전통사찰이 농지를 취득하게 한다, 취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양당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주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측 의견 듣고, 지금 농지법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정부도 고민 중이고 여당도 고민 중이고 저희들도 고민 중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총 관계가 있어서 정부 측 의견 듣고 오늘 심사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종종하고 전통사찰 농지 소유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고 그게 사실은 많이 무너져서 50% 이상이 이미 임차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농지 제도 개편을 지금 검토하면서도 그렇고 소유를 그래도 가급적이면 조금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현행 헌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을 해서 지금 푸는 방법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 제도에 관해서도 저희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종중이나 전통사찰의 경우에, 종중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농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중의 경우에도 실제 영농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도 농지은행에다가 맡겨서 농지은행에서 다시 그걸 임대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이 종중 소유의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시 거기다 줄 수 있게 그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종중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전통사찰 부지에 있는,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데 지목상 농지로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돼 있었던 그것들은 저희가 다 해결을 해 줬습니다, 농지가 아닌 걸로 풀 수 있도록.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전통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농지를 소유해서 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실습지를 명목으로 저희들이 풀어 준 게 뭐냐 하면 전통사찰하고 연접해 있는 시군의 농지는 실습지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연접 시군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오는 농지도 소유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취지 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스님들이, 전통사찰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영농을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할 거고 진짜 영농을 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영농법인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 실제로 그런 거라고 그러면 뭔가 농지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마 큰 농지는 아닐 테니까, 소규모 농지들이 많을 테니까 그걸 전용해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농지은행이 그걸 사 가지고 사찰의 재산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이제 농지법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심사가 들어가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상욱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업정책관 윤원습